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</p> <p>2000년 예산에 편성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1,000억원을 '99년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6.6%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출자규모 - 총 1,000억원(지하철공사 700, 도시철도공사 30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비비 1,000억원을 우선상환 가능한 고이올 부채 중 도시철도공사의 215억원(한빛은행 9.25%)과</li> <li>○ 지하철공사의 700억원(이자율 8.95%, 한빛은행 1차)을 상환하도록 배분하고,</li> <li>○ 잔액 85억원은 도시철도공사의 고이올 신규차입(3년만기 공사채 8.6%)규모를 축소토록 지원</li> </ul> <p>※ 고이올 부채 중 우선상환 가능부채규모 및 배분</p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지하철공사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도시철도공사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우선상환 가능규모 (금융자금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550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5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은행차입금</td> </tr> <tr> <td>배 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억원</td> <td>도시철도공사는 신규차입규모를 축소토록 85억원 지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지하철공사	도시철도공사	비 고	우선상환 가능규모 (금융자금)	1,550억원	215억원	은행차입금	배 분	700억원	300억원	도시철도공사는 신규차입규모를 축소토록 85억원 지원
구 분	지하철공사	도시철도공사	비 고										
우선상환 가능규모 (금융자금)	1,550억원	215억원	은행차입금										
배 분	700억원	300억원	도시철도공사는 신규차입규모를 축소토록 85억원 지원							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지원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철 양 공사의 고이올 부채를 우선상환하여 시 전체의 부채규모를 줄이고 공사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</li> <li>○ 장기저리(상환기간 7년 이상, 이자율 7% 이하)의 공공자금, 기금, 도시철도공채와 지방공모채, 공사채, 양키본드와 같이 채권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등은 우선상환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○ 지원액은 건설부채 원리금잔액 상환규모와 상계처리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집행방법 : 자본금으로 출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에서 공사에 지원한 예산은 납입자본금으로 누적되며, 공사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지원</li> <li>※ 예산과목 : 경제개발비, 교통관리비, 교통행정관리, 교통기획행정, 이전사업비, 출자금</li> </ul>	<p>1. 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 원 자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3-22 이재식 외 66인</li> <li>○ 소개의원 : 이철호의원(행정자치위원회)</li> <li>○ 접수일자 : 2000. 1. 21(접수번호 31번)</li> <li>○ 회부일자 : 2000. 1. 24</li> <li>○ 상정일자 -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0년 11월 7일 상정 의결)</li> </ul> <p>2. 청원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일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사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존치가치가 없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임.</li> </ul> <p>3. 소개의원 요지(이철호의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청원은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내의 60여 필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인접지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임.</li> <li>○ 서초동 1643번지 내 60여필지는 사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본 지역만 분지형태의 전용주거지역으로 남게 되어</li> </ul>												
<p>서울시서초구서초동1643번지내의용도지역 변경요구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</p>	<p>2000년 11월 일 도시관리위원회</p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접수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31</td> </tr> </table>	접수 번호	31											
접수 번호	31												